

『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1월 16일

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우리시에서 제정 적용하고 있는 “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” 조문중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건설 기계의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한자 ⇒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완화(안 제7조제1항)
- 운전일지의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⇒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완화(안 제7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2003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사항
-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 및 관리함에 있어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조문중 지금까지 절차상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대여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건설기계의 운전을 시장이 지정한자 ⇒ 해당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완화하고
 - 운전일지의 작업현황을 기록하여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⇒ 주무과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3년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하였듯이 대여자의 편의도모와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